

2008. 11. 18.

**수 신 : 제천시의회의장**

**제 목 :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**

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4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임 1. 의안발의 서명서 1부.

2.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. 끝.

발의자 : 김병룡 의원 (서명 또는 날인)

외 6 인

#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## 의안 발의 서명서

의원성명	서명 또는 날인	비고
김병종		
김영섭		
최영재		
최충섭	(with circled '최' character)	
김병장		
한경운		
김용수		

#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의안번호	1305
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8. 11. 18.  
발 의 자 : 김병룡 의원외 6인

## 1. 제안이유

제천시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촉진 및 관광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촉진 및 관광정책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(안 제2조)
-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, 제4조, 제5조)
- 위원의 업무상 취득한 비밀보호 및 관계전문가의 위원회 출석 발언 규정을 정함(안 제6조, 제7조)
-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함(안 제8조)

## 3. 제정안 : 불임

## 4. 관계법령 : 불임

- 지방자치법 시행령[일부개정 2008.10.8 대통령령 제21075호]
- 관광기본법[일부개정 2007.12.21 법률 제8741호]

## 5. 기타 참고사항

- 타시군 조례 : 불임

##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제천시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유치촉진 및 관광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제천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

1. 관광진흥 중장기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
2. 관광정책 타당성 검토
3. 관광자원의 활용 방안
4. 관광개발 및 관광상품 개발
5. 관광객 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
6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
**제3조(구성 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제천시 소속 공무원
  2. 제천시의회 의원
  3.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.
-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관광 팀장이 된다.

**제4조(위원장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(비밀보호)**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7조(출석 발언)**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광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·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**제8조(수당 등)**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9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[관계법령]**

**지방자치법 시행령**

[일부개정 2008.10.8 대통령령령 제21075호]

**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)**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·권고·건의·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

**관광기본법**

[일부개정 2007.12.21 법률 제8741호]

**제1조 (목적)**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

**제6조 (지방자치단체의 협조)**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[타시군 조례]

## 인제군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제정 2004년 10월 12일 조례 제1808호

**제1조(목적)** 인제군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관광정책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, 인제군 번영회장으로 하며, 위촉직위원은 인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, 대학교수, 관광종사자 등 관광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인제군 중장기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
2. 인제군 모험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 및 추진
3. 관광정책 결정 시 타당성 검토
4. 관광자원의 활용 방안
5. 관광개발 및 관광상품 개발
6. 관광진흥 방안으로서의 관광마케팅 전략
7. 기타 인제군 관광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

**제4조(임기)**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,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촉직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장은 해촉할 수 있다.

**제5조(위원장의 직무 등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고,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회의 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.

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출석발언)**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광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·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**제8조(간사와 서기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, 서기 각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관광기획담당이 된다.

**제9조(연구·조사 위탁)** 위원장은 관광정책 결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연구와 조사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10조(수당 등)**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